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문화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0. 8

나. 제안자 : 이상철 의원외 8인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라. 상정일자 : 2010. 10. 25(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이상철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2007년 1월 박물관 자료구입 시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 첨부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유물구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심의회 기능 중에서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신설함.(안 제18조)

-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이상철 의원이 2010년 10월 4일에 발의하여 10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현행 조례는 박물관 자료구입 시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유물구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유물가격에 외부감정서 첨부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합산됨에 따른 유물 구입비 상승과 매도자가 최종 심의를 마친 유물을 되찾아 감정서를 발부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과 유물감정료 부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17조 (심의회 구성)

- 제12조 제6항에서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심의회”로 표기하는 사항임.

##### 나. 제18조 및 제21조 (심의회 기능 및 자료구입)

- 심의회 기능(제18조) 중 고증, 진위여부, 적정가격 등을 총칭하는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제21조)

본 조항은 유물구입시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7년 1월에 개정하였으나, 2007년도에만 감정서를 첨부하여 유물을 구입하였고 이후에는 구입한 사례가 없음.

감정서 첨부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매도가에 감정서 첨부에 따른 수수료가 합산됨에 따라 유물 구입비가 상승할 수 있음.

☞ (사)한국고미술협회<sup>1)</sup> 시가감정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시가 감정 기준 금액	시가감정료	부가세	계	비 고
500만원미만	100,000	10,000	110,000	-시가감정은 미술품 진위감정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진위감정 수수료 33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총 감정수수료임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300,000	30,000	330,000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500,000	50,000	550,000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800,000	80,000	880,000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1,000,000	100,000	1,100,0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2,000,000	200,000	2,200,000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00,000	300,000	3,300,000	
5억원이상, 7억원미만	4,000,000	400,000	4,400,000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6,000,000	600,000	6,600,000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8,000,000	800,000	8,800,000	

※ 자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 1971년에 결성되어 고미술 상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미술품 전문 감정기관으로 알려졌으며, 고미술 유통질서 확립 및 자정사업과 고미술 감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감정가 대비 구입금액 비교(2007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자 료 명	수량	구입금액	감정서가격	비고
계		53	178,719	229,000~230,000	128.1~128.7%
1	朝鮮華商貿易組合	1	8,333	9,000	108%
2	舊條約彙纂 第3卷 朝鮮流球	1	4,666	5,000	107%
3	임오군란 및 조선관련 석판화	16	16,500	18,000	109%
4	우체통	1	8,333	9,000	108%
5	강화도 물하매입 일기	5	1,933	2,500~3,000	129~155%
6	강화도 호구단자	10	2,433	3,000	123%
7	강화도 추수기	3	3,666	4,000	109%
8	물하 원장부	2	3,000	3,500	116%
9	강화 원장부	10	5,500	6,000~6,500	109~118%
10	분청사기철화연당초문장군	1	50,000	80,000	160%
11	청자백상감초화문편호	1	28,000	35,000	125%
12	청자상감국화문합	1	2,500	5,000	200%
13	청자음각연화문표형주자	1	43,855	50,000	114%

※ 자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둘째, 매도자가 박물관자료평가 실무위원회 및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유물을 되찾아 감정서를 발부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음.

☞ 타 시·도 유물구입 절차

기관명	구입 절차	절차별 내용	감정서 첨부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1차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내부 연구직 3인(필요시 외부인사 위촉)</li> <li>- 내용 : 유물가치 및 가격평가</li> </ul> </li> <li>○ 2단계 : 2차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5인이상(박물관장이 위원장, 간부 연구직 구성)</li> <li>- 내용 : 유물구입여부와 가격 결정</li> </ul> </li> <li>○ 3단계 : 3차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문화재위원 3인 이상</li> <li>- 유물구입여부와 가격 최종 확정</li> </ul> </li> </ul>	×	3단계중 1,2차 평가는 내부직원들에 의해 실시
서울역사박물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유물수집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10인 이내(관장이 위원장, 소속 직원으로 구성)</li> <li>- 내용 : 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li> </ul> </li> <li>○ 2단계 :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평가대상별 3인이상 구성(외부 전문가)</li> <li>- 내용 : 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li> </ul> </li> <li>○ 3단계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구입대상유물 최종심의</li> </ul> </li> </ul>	×	실질적 평가는 2단계로 구성

기관명	구입 절차	절차별 내용	감정서 첨부	비고
부산박물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학예연구직 5인</li> <li>- 내용 : 수집대상유물 조사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li> </ul> </li> <li>○ 2단계 : 유물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문화재 전문가 3~5인</li> <li>- 내용 : 유물의 가치, 진위 및 적정가격여부 평가</li> </ul> </li> <li>○ 3단계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유물가격 및 구입여부 최종 결정</li> </ul> </li> </ul>	×	실질적 평가는 2단계로 구성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감정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5인 이내</li> <li>- 내용 : 유물감정 및 평가</li> </ul> </li> </ul>	×	내부검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
인천시립박물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박물관자료평가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학예연구직 3~5인</li> <li>- 내용 : 해당유물 구입의 적정성 여부 검토</li> </ul> </li> <li>○ 2단계 :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문화재 전문가 3~5인</li> <li>- 내용 : 유물의 고증과 감정(진위여부 및 가격평가)</li> </ul> </li> </ul>	○	1단계는 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에 별도 규정

※ 자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셋째, 자료에 의하면 감정기관이 1개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시 감정서의 법적효력 유무 등 감정기관 및 감정가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 국내 고미술 감정기관

기 관 명	감 정 종 목	특 징
(사)한국고미술협회	고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옥석공예, 목칠공예, 민속장신구 등	박물관 구입 유물 감정 가능
(사)한국화랑협회	근대이후 한국화, 사군자, 서예, 회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근대 이후 조각, 판화 범위는 한국미술품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국의 작품도 가능	박물관 구입 유물 감정 불가능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양화, 한국화, 동양화	박물관 구입 유물 감정 불가능

※ 자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넷째, 전국 국·공립 박물관 중 우리시만이 외부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유물을 구입함으로써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 신현환·이용범 의원

- 2007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불과 몇 년전에 개정한 내용을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

### < 답 변 >

#### ○ 이상철 의원,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

- 신중성과 투명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100만원이상 유물구입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나, 조례개정후 감정수수료에 따른 유물구입비 상승, 절차상 불편함, 감정기관의 객관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함.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안영수, 신현환, 강병수, 이용범, 박순남, 박승희 위원
- 나. 반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제21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할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심의회 구성) ① 제12조제6항에 의한 <u>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u>는 분야별로 3인 이상으로 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7조(심의회 구성) ① -----            -- 심의회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심의회 기능) (생략)</p> <p>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u>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2. <u>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u></p> <p>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8조(심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p> <p>1. ----- 고증</p> <p>2. <u>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u></p> <p>3. -----            -----</p> <p>4. -----            ---</p>
<p>제21조(자료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u>유물은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진·위 여부 및 시가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21조(자료구입) ① -----            -----            ----- 범위            에서 -----            ---</p> <p>② <u>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u>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u></p> <p>④ (생략)</p>	<p>③ ----- ----- ----- &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